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중 소 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의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2.8 공포, '21.6.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범위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안 제3조제3항)

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안 제18조 및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11. ~ 20.2.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법”을 “가. 법”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나.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	1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가.~라. (생략)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라.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③ ----- ----- ----- ----- <u>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u> , 이중(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생략)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2. 개별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단위: 만원)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	300	400	500	가. 법----- ----- ----- ----- -----	법 제28조제1항	300	400	500
< 신설 >	< 신설 >	< 신설 >			나. 법 제25조제2항 의2 제7항 을 위반하 여 중소벤 처 기업 연 구원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 우	법 제28조제2항	1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2-481-4541